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- 82호

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1월 26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차량총중량 4.5톤 초과 수소·천연가스 연료 승합자동차의 운행이 증가하고 있으나, 연료장치 안전 기준 부재로 대형 사고가 우려되는 바 전복 사고시 연료장치(용기, 용기밸브, 배관 및 연결장치 등)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천연가스 및 수소가스를 사용하는 차량총중량 4.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마을버스를 포함한 입석이 있는 자동차, 마을버스 및 2층 대형승합자동차 제외)의 연료장치 안전성 기준 추가(안 제91조제7항 신설)

1) 자동차 및 주요 차체 구조물의 전복 시험시 연료장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면 또는 차체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하여 연료장치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함

3. 의견제출

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. 3. 27.(월)까지 국토교통부(첨단자동차기술과, 전화 044-201-3851, 팩스 044-201-5585)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molit.go.kr>정보마당>법령정보>입법예고란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제출

○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
○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 정 안	수 정 안	사 유

나. 보내실 곳 :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

(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우편번호 30103)

1. 개정이유

차량총중량 4.5톤 초과 수소가스·천연가스 승합자동차의 운행이 증가하고 있으나 연료장치 안전 기준 부재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바 전복 사고시 연료장치(용기, 용기밸브, 배관 및 연결장치 등)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천연가스 및 수소가스를 사용하는 차량총중량 4.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마을버스를 포함한 입석이 있는 자동차, 마을버스 및 2층 대형승합자동차 제외)의 연료장치 안전성 기준 추가(안 제91조제7항 신설)

1) 자동차 및 주요 차체 구조물의 전복 시험시 연료장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면 또는 차체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하여 연료장치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　　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예정

라. 기　　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토교통부령 제 호

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천연가스 및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총중량 4.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마을버스를 포함한 입석이 있는 자동차 및 2층 대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)는 별표 11의6의 천연가스 및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합자동차의 연료장치기준의 시험조건 중 어느 하나로 시험하였을 때 연료장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별표 11의6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·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11의6]

천연가스 및 수소가스를 사용하는 차량총중량 4.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의 연료장치 기준(제91조제7항 관련)

시 험 조 건	연 료 장 치 기 준
1. 완성차의 전복시험 2. 완성차를 대표하는 주요 차체구조물의 전복시험 3. 완성차의 수학적 해석에 의한 전복시험	연료장치(용기, 용기밸브, 배관 및 연결장치 등. 단, 충전구 및 충전용 배관 제외)가 지면 또는 차체(최대 변형이 발생되는 순간을 포함한다)에 직접 접촉되지 않을 것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1조(연료장치) ① ~ ⑥ (생략) <신 설>	제91조(연료장치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천연가스 및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총중량 4.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마을버스를 포함한 입석이 있는 자동차 및 2층 대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)는 별표 11의6의 천연가스 및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합자동차의 연료장치기준의 시험조건 중 어느 하나로 시험하였을 때 연료장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